

# 「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2. 6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체육과장)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정착 시키고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 임.
  
- 주요 내용을 보면

-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진흥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
  -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관리,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
- 보조금 지원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부